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2
----------	-----

제출년월일 : 1995. 5. 23.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본 조례에 포함하고,
- '95. 7. 1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과 '95년도 신규 구입 소방장비와 조달구입 요청한
소방장비의 운전원 및 조작용의 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 정원관리기관란에 「의회사무처 정원, 57명」을 포함
- ▷ 정원 : 47명 증원
 - 본청 : 1명(정무직)
 - 직속기관(소방서) : 46명(소방위 2, 장 2, 교 21, 사 21)
 - 청주소방서(6명) : 사다리차 1, 화학차 1
 - 충주소방서(12명) : 대형펌프차 1, 사다리차 1, 조명차 1, 배연차 1
 - 제천소방서(10명) : 굴절사다리차 1, 고가사다리차 1, 배연차 1
 - 영동소방서(12명) : 구난차 1, 굴절사다리차 1, 화학차 1
 - 증평소방서(6명) : 구난차 1

□ 개정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처"를 삽입하고, 각호중 본청 "893명"을 "894명으로, 직속기관 "864명"을 "910명"으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처 57명

제3조중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처"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정무직(도지사 1명)의 정원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